



안세회계법인 • 829-7575

세 稅 계 計 재 財 경 經 AnSwer

••• 2021/3/22

전직원 회람 공지 MEMO+경영관리자의 재무의사결과와 稅計經營戰略

법인의 업무용승용차 취득·유지·운영비용의 손금산입·불산입 판단

개념, 구분	손금불산입 적용대상, 금액계산, 한도 등
업무용승용차	법인의 승용차(취득, 임차, 리스 등)로서 개별소비세 과세대상(정원 8명 이하의 대·중·소형 차량, 승용·전기·이륜·캠핑용 차량도 해당 - 제외(화물차, 정원 9인 이상과 경차(① 1000cc 이하, ② 길이 3.6m 이하, ③ 폭 1.6m 이하))
제외업종 등	운수업, 자동차판매·임대업, 운전학원업, 기계경비출동차량, 리스시설 대여업, 장의·운구용 차량, 임시허가 자율주행차량
감가상각비 등	5년 정액법의 강제 상각제도 적용함(과대상각비만 손금불산입)
관련비용 합산 (제반유지비)	취득유지 제반비용(감가상각비, 임차료, 보험료, 수선유지비, 연료비, 자동차세 등 세금공과부담금, 리스부채이자비용 등)
미사용금액 부인 (업무사용비율)	업무전용보험 미가입: 승용차 비용 전액이 미사용임 → 손금부인: 승용차이용자 상여처분 업무전용보험 가입: 승용차비용×(1 - 업무사용비율): 손금부인 상여처분
업무사용비율 (운행기록부)	운행기록부 작성비치: 업무사용비율 = 업무사용거리 ÷ 총주행거리 운행기록부 미작성: 관련비용 1500만원 이하: 사용비율 = 100%로 봄 관련비용 1500만원 초과: 사용비율 = 1500만원 ÷ 총비용
감가상각비 처리	승용차별 감가상각비 연 800만원 초과액: 손금불산입 유보 후 800만원 미달시 손금추인(나중 손금 인정함) 승용차별 임차료 등 연 800만원 초과액: 손금불산입 기타사외유출임
승용차 처분손실	승용차별 처분손실 800만원 초과액: 손금불산입, 기타사외유출 승용차별 처분손실 손금불산입의 이월공제: 처분 후 매년 800만원씩 손금산입해나감
부동산임대업 등	가족회사 등: 승용차 비용한도 1500만원 → 500만원, 감가상각비·처분손실한도 800만원 → 400만원임

고객 담당자 :